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윤효식(숭실대학교)

세션명	워크숍2.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안정배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프로젝트)	발제	안정배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프로젝트)
	패널	없음		
플로어	약 15명 참여			

제안내용	<p>2011년 구글이 자사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감시 행태를 공유한 이후, 현재 전세계 68개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ransparency Reporting Index 2018).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투명성보고서가 대부분 기업 내부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공개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인 정부의 데이터는 해당 관할권 내 인터넷 규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p> <p>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2015년부터 매년 정부 데이터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인터넷 검열/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감시 등의 규제를 독립하고 있는 정부 데이터에 의존적인 분석은 1) 사후적 분석에 그칠 수 밖에 없고, 2) 자료공개 의 소극성으로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많은 비용이 따르며, 3) 따라서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당한 사유인 일반 시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조정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p> <p>시민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규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1) 정부의 검열/감시 행태와 더불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부 규제의 현행 기준과 원칙을 모니터링하고, 2) 그것이 부적절한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p> <p>본 워크숍은 1) 지난 4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수행된 국내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통계와 해당 규제조치를 규준하는 법규, 심의기관 등을 소개하고, 2) 미디어에 드러나는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여론의 우려/요구를 포착하여, 상호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3) 또한, 여론에 드러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해 현행 규제제도가 해당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두루 갖춘 인터넷 규제의 제도적 설계를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도출한다.</p>
------	--

요약내용	<p>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일정기간 내에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기록, 콘텐츠와 관련된 보고서이다. 투명성 보고서를 실시하는 지역이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의 자료를 기초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공유 및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로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 4가지 감시제도가 있다. 검열방식으로는 삭제, 사용자계정 중지 및 없앴, 접속차단, 청소년 유해매체물표시가 있고 접속차단이 제일 많은 편이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신소위 위원전문성 문제로 심의범위 및 권한범주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불법정보 심의 상 문제인데 수사 중 정보 시정요구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기계적 결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유해정보 심의 상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 소위 위원들의 소양 문제로 근거없는 선입견 기반 인터넷 이용자 매도가 있으며 다섯 번째로 심의 투명성 문제로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비공개와 녹음, 촬영 허가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p>
논의세부내용	<p>1.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현황과 이슈</p> <p>(1) 투명성보고서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구글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기록, 콘텐츠와 관련된 통계를 담은 보고서 - 어떤 정부 기관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자주 요구했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8년간 보고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투명성보고서를 실시하는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p>(2) 한국인터넷 투명성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자료를 기초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공유 및 분석 - 2016년 주요검열 기관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하고 검열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다 20만건 이상 - 감시 같은 경우는 방실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수사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2016년 기준 평균 국민 20%가 인터넷 감시 경험 - 한국정부는 정보자료공개에서대해서 투명한 편이다 -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감시에서 법적 최소주의원칙 위반문제가 빈번 - 불법소지가 있는 대상 및 자료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취를 취하는 문제점이 있다. - 불법정보는 법적기준이 있더라도 유해정보는 기준이 없고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검열기준이 모호하다 - 검열을 하는 거버넌스 자체 문제가 취약하다. <p>(3) 한국의 인터넷 감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4가지 감시제도 형태가 있다. - 2%정도가 실질적인 감시대상, 주변사람들까지 하면 20%가 감시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는 유선이 많았었는데 인터넷이 유선 감청을 넘어서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 통신제한조치 요청기관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은 상당히 작은 반면 국정원은 앞도 적으로 많다. - 대부분 정보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 통신사실 확인은 통신한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과 통신을 했다 정도 알 수 있는 감

시제도이다.

- 통신사실 확인은 검찰과 경찰이 높다.
- 다행히 통신사실 확인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수치이다.
- 통신자료제공역시 검찰, 경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대만 감시수치는 다 합쳐서 5천건이 안된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4) 한국의 인터넷 검열

- 검열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을 할 때 막는 것이다.
- 검열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삭제, 사용자계정 중지 및 없앴, 접속차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 접속차단이 제일 많다
- 시정요구 연간변화 추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배 증가했다.
- 개인 정보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검열이 증가
- 시정요구 준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는 거의 수치가 미미하다.
- 사안별 시정요구는 다양하다. (불법정보는 성매매, 도박이 주를 이루고 유해정보는 혐오 발언 등이 있다.)
- 인지방법은 2가지가 있다. (방심위에 민원제기, 방심위가 모니터링 수행)
- 요청기관별 시정요구는 시약청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민원제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임시조치로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 <통신소위 위원전문성 문제>
심의범위 및 권한범주에 대한 이해부족
인터넷 통신기술 및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서비스/플랫폼 규제)
사무국 보고 및 신고기관 의견에 의존
- <불법정보 심의 상 문제>
수사 중 정보 시정요구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기계적 결정
인터넷방송규제(계정으로 규제할 것인지 URL로 규제할 것인지)
- <유해정보 심의 상 문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 <소위 위원들의 소양 문제>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 듣는이에게 성적 수치심 줄 수 있는 발언
근거없는 선입견 기반 인터넷 이용자 매도
- <심의 투명성 문제>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하지 않음 (현장 방청만 허용)
녹음, 촬영 허가에 소극적
편집되지 않은 녹화/녹음자료가 없다
- <기타>
인터넷 심의의 기술적 비효율성
의견진술자에 대한 강압적 태도
유관단체의 성과위주 신고

<질의응답>

(플로어)

-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비균형 고려해서 뽑아지는 지 등)
- 전문성 보안에 대한 장치가 있는지
- 범죄로 구분하는 게 어느 선에서인지

(안정배)

- 심의의 범위와 과정에서 말해드리자면, 행위자체에서 구속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법원이 형을 내릴 수가 있다. 검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수사와 법적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행위가 불법요소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되는 중에라도 그런 정보에 대한 접속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만 심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다. 사업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권고이기 때문에 무시 할 수가 있다. 심의 위원은 청와대 여당 야당 정치조직들에 나누어져있다. (추천권) 전문성이나 소양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장치가 없다.

(플로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성공사례가 있는지?

(안정배)

- 2016에 크게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었던 'NorthKoreaTech' 사건이 있는데 그냥 보안 업체인데 이름에 NorthKorea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위에서 사이트를 폐쇄를 당했고 이이신청을 했고 소송도 해서 판결은 방심위가 잘못했다고 내려졌지만 방심위가 이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다.

(플로어)

- 해외에서는 어떤식으로 검열하는지?

(안정배)

- 인터넷 검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인터넷 정보유통이 빨리 유통되면서 먼저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시스템은 전문가 이용자 사업자 전문기관이 모여서 검열을 시행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가가 많지는 않다.